

- (사업부서)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등으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 확인  
 (인사부서) 명령부 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사업부서 재직기간** 확인  
 ※ 사업부서,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성격에 따라 확인  
 - 발급번호는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시행규칙 별지제19호의2서식]의 **일련번호**를 기재  
 ※ 소속(퇴직) 기술인이 요청하면 업체에서 경력확인서 확인(발급) 시 접수대장을 관리하는 규정임 (예시)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일련번호	신청 연월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부수		발급부수	처리자
2019-01-001	2019.4.5.	홍길동	80.12.12	1	.....	1	이순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경력확인서

구분	인사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00팀	000팀
담당자	김 0 0 (서명)	박 0 0 (서명)
연락처	02-1234-5678	02-2345-6789
발급번호	2019-01-001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인적사항	①성명 <b>홍길동</b> <span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0%; padding: 2px;">서명 또는 인</span> 전자우편주소 <b>123@kocea.or.kr</b>	주민등록번호 <b>801212-1234567</b> 전화번호 02) 1234 - 5678	현대전화번호 <b>010-1234-5678</b>
	②주소 <b>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b>		
소속회사	③회사명 <b>(주)△△건설</b> 주소 <b>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8</b>	대표자 <b>이 기술</b>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b>111-11-11111(111111-2111111)</b>	④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b>토목건축공사업(토목건축-11)</b>
	⑤입사일 <b>2008.06.01.</b>	⑥퇴사일 <b>2009.11.30.</b>	전화번호 <b>02) 3416-9500</b>

### 기술경력

연 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⑯ 공법
	⑰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⑱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⑲ 착공일	⑳ 준공일(예정일)
※ ⑰ 공사(용역)개요, ⑱ 공사(용역)금액, ⑲ 착공일 및 ⑳ 준공일(예정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08.6.1 ~ 09.11.30	고속국도제00호선여주-양평간건설공사				한국도로공사	
	토목	토목시공	고속국도, 터널	시공	부장	현장대리인	NATM
	도로 : L=20Km,B=14m(4차선)				50,000(백만원)		
	☞ ⑰~⑳란은 경력확인서에 발주청(인.허가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만 작성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2019 년 4 월 5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 유의사항

1. ~ 5 생략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기술경력

연 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⑯ 공법	
	⑰ 공사(용역)개요(70자이내 공란포함)				⑱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⑲ 착공일	⑳ 준공일(예정일)
※ ⑰ 공사(용역)개요, ⑱ 공사(용역)금액, ⑲ 착공일 및 ⑳ 준공일(예정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장이상 (을지첨부시) 작성시 각장에 (사용자)또는 발주자의 확인 (간인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 표준분류표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대분류	소분류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1. 도로 2. 고속국도 3. 국도 4. 교량 [일반교량, 장대교량 (100m이상)]	1. 토공 2. 미장, 방수 3. 석공 4. 도장 5. 조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금속구조물창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장 16. 준설 17. 수중 18. 조정식재 19. 조정시설물설치 20. 건축물조립 21. 강구조물 22. 온실설치 23. 철강재설치 24. 삭도설치 25. 승강기설치 26. 가스시설시공 27. 특열용 사용 기재시공 28. 온돌시공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타	1. 계획및조사 2. 측량및지적 3. 감정및평가 4. 설계 5. 견적 6. 시공 7. 품질관리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화약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12. 유지보수및보강 13.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14. 감리(건축법) 15. 감리(주택법) 16-1.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또는 감독 권한대행) 16-2.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 관리 또는 전부 중 상세 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 (타당성조사) 18. 감독 19. 사업관리 20. 기술조사 21. 행정지원 22. 자문및강의 23. 연구 24. 정보처리 25. 기타	1.사업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참여기술인 1.사업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참여기술인 1.현장대리인 2.참여기술인 1.품질관리자 2.품질관리 1.안전관리자 2.참여기술인 1.환경관리자 2.참여기술인 1.책임기술인 2.분야기술인 3.기술지원기술인 4.상주(건축사보)기술인 1.총괄감리원 2.상주감리원 3.상주감리원(신규) 4.비상주감리원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상주기술인 3.기술지원기술인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상주기술인 1.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참여기술인 4.기술지원기술인 1.용역감독 2.공사감독 3.일반감독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5. 공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다.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및지형공간정보 12. 지적	13. 지하철 14. 터널 15. 발전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 [상수도, 정수장] 23. 하수도 24. 공용청사 25. 송전 26. 변전 27. 하천 [하천정비(지방/국가)] 28. 통신·전력구 29. 기타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물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비고> -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 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 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 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의 종류에 의한다.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p>1. 단독주택</p> <p>가. 단독주택</p> <p>나. 다중주택</p> <p>다. 다가구주택</p> <p>라. 공관</p> <p>2. 공동주택</p> <p>가. 아파트</p> <p>나. 연립주택</p> <p>다. 다세대주택</p> <p>라. 기숙사</p> <p>3.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4.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5. 문화 및 집회시설</p> <p>가. 공연장</p> <p>나. 집회장</p> <p>다. 관람장</p> <p>라. 전시장</p> <p>마. 동·식물원</p> <p>6. 종교시설</p> <p>가. 종교집회장</p> <p>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p> <p>7. 판매시설</p> <p>가. 도매시장</p> <p>나. 소매시장</p> <p>다. 상점</p> <p>8. 운수시설</p> <p>가. 여객자동차터미널</p> <p>나. 철도시설</p> <p>다. 공항시설</p> <p>라. 항만시설</p> <p>9. 의료시설</p> <p>가. 병원</p> <p>나. 격리병원</p> <p>10. 교육연구시설</p> <p>가. 학교</p> <p>나. 교육원</p> <p>다. 직업훈련소</p> <p>라. 학원</p> <p>마. 연구소</p> <p>바. 도서관</p>	<p>11. 노유자시설</p> <p>가. 아동 관련 시설</p> <p>나. 노인복지시설</p> <p>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p> <p>12. 수련시설</p> <p>가. 생활권 수련시설</p> <p>나. 자연권 수련시설</p> <p>다. 유스호스텔</p> <p>13. 운동시설</p> <p>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p> <p>나. 체육관</p> <p>다. 운동장</p> <p>14. 업무시설</p> <p>가. 공공업무시설:</p> <p>나. 일반업무시설</p> <p>15. 숙박시설</p> <p>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p> <p>나. 관광숙박시설</p> <p>다. 다중생활시설</p> <p>라. 그 밖에시설</p> <p>16. 위락시설</p> <p>가. 단란주점</p> <p>나. 유흥주점</p> <p>다. 그 밖에 시설</p> <p>라. 무도장, 무도학원</p> <p>마. 카지노영업소</p> <p>17. 공장</p> <p>18. 창고시설</p> <p>가. 창고</p> <p>나. 하역장</p> <p>다. 물류터미널</p> <p>라. 집배송 시설</p> <p>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p> <p>가. 주유소</p> <p>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p>	<p>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p> <p>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p> <p>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p> <p>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p> <p>사. 도료류 판매소</p> <p>아. 도시가스 제조시설</p> <p>자. 화약류 저장소</p> <p>차. 그 밖에 시설</p> <p>20. 자동차 관련 시설</p> <p>가. 주차장</p> <p>나. 세차장</p> <p>다. 폐차장</p> <p>라. 검사장</p> <p>마. 매매장</p> <p>바. 정비공장</p> <p>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p> <p>아. 차고 및 주기장</p> <p>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p> <p>가. 축사</p> <p>나. 가축시설</p> <p>다. 도축장</p> <p>라. 도계장</p> <p>마. 작물 재배사</p> <p>바. 종묘배양시설</p> <p>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p> <p>아. 식물과 관련된 시설</p> <p>22.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가. 하수 등 처리시설</p> <p>나. 고물상</p> <p>다. 폐기물재활용시설</p> <p>라. 폐기물 처분시설</p> <p>마. 폐기물감량화시설</p> <p>23. 교정 및 군사 시설</p> <p>가. 교정시설</p> <p>나. 갱생보호시설</p> <p>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라. 국방·군사시설</p> <p>24. 방송통신시설</p> <p>가. 방송국</p> <p>나. 전신전화국</p>	<p>다. 촬영소</p> <p>라. 통신용 시설</p> <p>마. 그 밖에 시설과</p> <p>25. 발전시설</p> <p>26. 묘지 관련 시설</p> <p>가. 화장시설</p> <p>나. 봉안당</p> <p>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p> <p>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 시설</p> <p>27. 관광 휴게시설</p> <p>가. 야외음악당</p> <p>나. 야외극장</p> <p>다. 어린이회관</p> <p>라. 관망탑</p> <p>마. 휴게소</p> <p>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 에 부수되는 시설</p> <p>28. 장례시설</p> <p>가. 장례식장</p> <p>나. 동물전용의 장례식장</p> <p>29. 야영장 시설</p>
--	---	--	--